

## 제2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 일시 : 2022. 9. 30(금) 14시00분
- 장소 : 상연재 시청역점 C9 컨퍼런스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간사

반갑습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간사를 맡고있는 유해물질 기준과장 ○○○입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올해 2022년 9월부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위촉되신 분도 계시고 계속 하시던 분도 계신데, 위원님들 모시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영인사, 심의위원 소개, 분과위원장 선출을 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 식품안전정책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 식품안전정책국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 제가 경주에서 열리는 경상북도 식품박람회에 참석하고 오느라고 시간 맞춘다고 하였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약처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관리하는 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식품의 기준·규격과 관리의 타당성을 다루며, 잔류물질분과, 위생제도분과부터 시작해서 방사능분과, 여러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잔류물질분과에서는 주로 농약 잔류물질의 기준을 설정하고, 시험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다루게 됩니다.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과 안전에 대해 각계를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식약처가 규제혁신과제로서 100대 과제로 식품과 의약품의 규제혁신과제를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의 마지막 보루는 안전입니다. 안전의 토대 위에서 기업의 활동이나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과제들을 발표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과제들을 저희가 새롭게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먼저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간사**

다음은 잔류물질분과를 담당하고 계신 ○○○ 식품기준기획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식품기준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제가 식품기준과장으로 있다가 지난주에 식품기준기획관으로 승진해서 잔류물질분과에 오늘 처음 참석해봤습니다. 오기 전에 들은 바로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여러 분과 중에 잔류물질분과가 위원님들의 학구열이 많아서 길게 하신다는 말씀을 잠깐 듣고,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새롭게 구성이 되셔서 또 지난번하고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잔류물질이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이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식약처 단독이라기보다 여러 부처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분과여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논의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식약처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간사**

다음은 위해평가를 총괄하고 계시는 ○○○ 식품위해평가부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위해평가부**

안녕하세요? 식품위해평가부장 ○○○입니다. 오래간만에 비대면 아니고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농약 전공은 아니었는데 식약처에 있다 보니까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어찌 됐건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잔류물질 기준이 어떤 원칙도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가는 일들을 해갈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간사**

다음은 외부 위원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잠시 짧게 부탁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A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A 위원

충북대 ○○○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간사

그다음 B 위원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분석기술과 미래 C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C 위원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처음 참석하게 되어 얼떨떨한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식품위생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간사

다음은 동서식품 D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D 위원

안녕하세요? ○○○입니다. 뵈 분도 있고 처음 뵈 분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식품안전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간사

대구대학교 E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E 위원

반갑습니다. ○○○입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간사

호서대학교 F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F 위원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간사

원광대학교 G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G 위원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의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간사

다음은 호서대학교 H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H 위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간사

고려대학교 I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I 위원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간사

다음은 저희 평가원의 ○○○ 잔류물질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평가원 잔류물질과 1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간사

오늘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부경대학교 ○○○ 위원님,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 위원님, 한경대학교 ○○○ 위원님, 제주대학교 ○○○ 위원님, 그리고 식품소비안전국에서 저희 위원회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정대로 분과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호선으로 추천되신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분과위원장을 이끌어가실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E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A 위원님께서 저번에 2년 하셨는데 2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 간사

다른 추천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동의로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없으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A 위원님을 2년 동안 잔류물질분과 위원장님으로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자리를 옮기시는 과정 중에 안내말씀 드리면, 식품안전정책국 국장님께서 ○○○ 교수님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전체 위원장으로서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장석 착석)

위원장님, 당선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부족한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추천할 때 보니까 전에 조금 아쉬운 게 많더라, 잘못된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표정 같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위원 일동 박수)

○ 감사

이어서 성원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B 위원님께서 오고 계시지만 B 위원님을 빼더라도 재적분과위원 총 17명 중 참석 11명으로 65% 참여로 성원되었음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좀 전에 ○○○ 과장님께서 성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회에 필요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다음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의 보안 유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서약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는 회의 끝난 후에 회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의결서는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종합 작성하신 이후에 심의의결서에 위원님들께서 서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안전 보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보겠습니다. 이번 심의에 앞서 지난 2022년 1회 5월 10일에 개최되었던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호 안전인 플로릴피콕사미드 등 5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2호 안전인 멍틸디노캡 등 12종 농약의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3호 안전 멍틸디노캡 등 4종 농약 시험법 신설(안)에 대해서 2022년 5월 20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차수 회의 결과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시면 안전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 심의를 위해서 안전별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제공된 안전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안전별 제안설명을 듣고 개별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제1호 국내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유해물질기준과 1**

오늘 심의하실 안전은 총 5건입니다. 준비된 심의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호 안전 국내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진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농약이

농산물 중 110종, 285건의 기준 신설 및 개정안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농약의 잔류물의 정의 신설 (안)입니다. 스피로피디온입니다. 모화합물인 Spiropidion과 대사체 중 하나인 Spiropidion-enol의 합으로 잔류물의 정의를 신설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농약 플루피리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화합물의 플루피리민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잠시만요. 보니까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 ○ 유해물질기준과 1

안전별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서 스피로피디온 등 110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안)입니다. 농약별 등록하고자 하는 농산물별로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된 수확일의 잔류량을 근거로 잔류된 양의 3배 수준에서 기준안을 마련하고, 위해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된 잔류허용기준(안)입니다. 18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스피로피디온은 잔류물의 정의와 더불어서 고추 0.7 mg/kg 등 9개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건이 63페이지까지 총 285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전은 행정예고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1호 안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잔류물의 정의 2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잔류물의 정의는 두 농약 다 모화합물로 정해진 것입니다. 110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전 1호는 원안의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해물질기준과 1

2호 심의안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 H 위원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봅시다.

○ 유해물질기준과 1

저희가 전문가 검토회의를 다 하였던 것이고, 다 동일한 원칙이어서 간략하게 원칙을 설명드리고, 숫자를 읽기가 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 연구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난상토론 끝에 검토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렇더라도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H 위원

저는 궁금해서 하나 여쭙보는데, 7페이지에 110종 농약이 쪽 써있어서 보다가, 오메토에이트는 국내 금지된 농약 아닙니까?

○ H 위원

제가 구글링 하니깐 이것은 국내에서 금지가 되었다.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 G 위원

디메토에이트가 분해가 되면 오메토에이트가 됩니다. 오메토에이트는 금지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디메토에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오메토에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토에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E 위원

디메토에이트를 써서 대사물질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 유해물질기준과 2

네, 그래서 기준을 안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 H 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냥 오메토에이트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표시의 문제인데 그냥 기준이 있는 물질들을 쪽 언급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사용이 허가된 농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메토에이트의 경우에는 금지가 되었는데 디메토에이트가 분해되고 대사가 되면서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쓰여 있다면 이 농약 자체는 금지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가도 되는 것이 맞는지 해서요.

○ 위원장

오메토에이트라는 농약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유해물질기준과 2

아니요.

○ 위원장

디메토에이트의 대사산물이라면서요?

○ 유해물질기준과 2

네, 맞습니다.

○ H 위원

그러면 잔류물의 정의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논점이 오메토에이트라는 농약은 없는데 디메토에이트를 쓰면 대사산물로 오메토에이트가 나온다. 그러니까 오메토에이트에 대한 기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 H 위원

제 생각에 그럴 경우에 marker residue로 들어가야지 개별 명칭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 F 위원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농약성분 유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품은 디메토에이트로 해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되어야 하는데 오메토에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오메토에이트가 제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F 위원

앞에 농약성분 해놓고 옆에 EC, SC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것이 오메토에이트인지 디메토에이트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 위원장

명확히 해야 될 것이 H 위원님 말씀대로 오메토에이트라는 농약이 있으면 이것은 금지농약으로 가야 맞는 것이고, 디메토에이트의 대사산물로 보면, 지금 대사산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H 위원님의 논리는 이것이 만약에 대사산물인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잔류물의 정의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E 위원

그것은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정할 때 정책들이 국가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대사물질도 독립 농약의 이름으로 기준설정을 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하였고, 미국이나 CODEX 같은 경우에는 대사물질 안에 집어넣어서 만듭니다. 헛갈려요. 대사물질만 기준도 정하고, 디메토에이트 기준 밑에 오메토에이트가 포함되게 2개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분리시켜 만듭니다.

○ 위원장

H 위원님의 말씀은 이것 같습니다. 티아메톡삼 같은 경우는 대사산물이 농약으로 또 있잖습니까.

○ E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위원장

그러니까 오메토에이트가 농약으로 있습니까?

○ H 위원

금지되었습니다.

○ 위원장

논점은 제품이 있으면 금지 농약이므로 MRL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대사산물이면 대사산물 관리를, 대사산물에 대한 MRL을 정할 것인지입니다.

○ 유해물질기준과 1

그런데 오메토에이트가 생성되므로 안전성 차원에서 많이 생성되는 오메토에이트를 관리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H 위원

허가된 농약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 간사

H 위원님의 지적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농약을 등록하는 것 보다는 잔류물의 정의로 관리하는 것이 맞고, 현재 오메토에이트 자체도 기준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이번 안건에서는 오메토에이트는 별도로 빼고, 다음 심의 때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먼저 간략하게 들어보고, 그다음에 식약처의 의견을 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H 위원님의 말씀은 오메토에이트가 금지 농약이므로 농약 등록 및 MRL을 설정하면 안 되고 대사산물이면 잔류물의 정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G 위원

농진청과 간담회 때 디메토에이트를 파에 등록하는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티아메톡삼처럼 다이메토에이트는 오메토에이트로 변화되는데, 예전에는 오메토에이트도 농약이 있었으므로 디메토에이트, 오메토에이트 기준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오메토에이트가 사용 금지가 되어 디메토에이트만 사용이 되었고, 그 형태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메토에이트 사용 등록을 할 때 거기에 따라 나오는 오메토에이트 기준을 추가로 뒤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체계였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디메토에이트, 오메토에이트를 구분해서 관리할 것인지, 금지되었으므로 대사체로서 잔류물에 묶어서 관리할 것인지 한번 논의해보자고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식약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간사

일단 저희가 이 건 말고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다른 농약도 검토한 후 농진청하고 협의하여 잔류물의 정의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물질들과 똑같은 체계로 만들어서 다음 심의에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H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식약처에서 이번 심의에서는 빼고 다시 준비해서 다시 심의에 올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호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그룹 잔류허용기준 신설**

○ 유해물질기준과 1

제2호 심의안건 설명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그룹 기준설정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해당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번 안건은 비스트리플루론 등 9종 농약, 14개의 엽채류, 엽경채류 그룹 기준 신설 건입니다. 1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룹 기준설정 원칙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채류와 엽경채류 각각의 대표작물을 대상으로 살포한 농약의 잔류량을 근거로 도출될 수 있는 4가지 값 ‘다’ 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4가지 값 중 가장 낮은 값을 그룹 기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한 가지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트리플루론입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원칙을 적용해서 도출될 수 있는 4가지 값 15 mg/kg, 7.0 mg/kg, 15 mg/kg, 15 mg/kg 중 가장 낮은 값 7.0 mg/kg을 엽채류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그룹 기준 14개를 설정하였습니다. 본 안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예고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호 안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네, 설명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평균값으로 설정하지 않고 가장 낮은 값으로 설정합니까?

○ 유해물질기준과 1

이 당시에 PLS 때문에 갑자기 등록하는 농약도 많아서 TMDI(%) 값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설정 원칙에 대해서 합의사항은 우선 농진청에 그룹 기준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그룹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TMDI(%) 값을 맞추기 위해서 좀 낮은 값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포장자료가 조금 더 넉넉해지면 통계 처리를 해서 상향할 조건이 된다고 하면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C 위원

몇 번 정도의 시험이 이루어진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하게 됩니까?

○ 유해물질기준과 1

각 포장시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C 위원

예를 들어 시험의 오류로 인해서 굉장히 낮은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낮은 값으로 설정한다면 설정된 기준값을 초과해서 부적합 농산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해물질기준과 1

포장시험에서는 중간값을 선택합니다. 그 값과 그 잔류량의 최대값, 그 포장자료의 OECD 계산기값, 기존에 그 농약에 설정된 소면적 재배기준의 최대값, 이렇게 4가지 경우에서 낮은 값을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시험에서는 중간값을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 간사

포장시험의 최대값이 아닙니다.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값 중 낮은 값을 선택합니다.

○ 위원장

포장시험의 낮은 값이 아닙니다. 그 4개의 건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중에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합니다.

C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 C 위원

네.

○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비스트리플루론 엽채류의 경우 7.0 mg/kg으로 제안하셨습니다. 고춧잎은 약 3.5 mg/kg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엽채류 기준을 7.0 mg/kg으로 설정하였을 때 고춧잎에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또 엽경채류 중 미나리를 보면 시험 결과값이 3.01 mg/kg입니다. 엽경채류 2.0 mg/kg을 설정하면 실제 부적합이 많이 발생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미나리에 개별기준을 설정한 후 엽경채류 2.0 mg/kg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험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준이 없는 작물들을 놓고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 유해물질기준과 1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나리 건은 미나리에 대한 포장시험이 대표작물로서 검토된 것이고, 미나리의 등록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된 부분은 아닙니다. 대표작물로 하다 보니 엽경채류를 유도한 거지 말씀하신 미나리를 등록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 B 위원

그래서 이 경우에 미나리가 엽경채류 2.0 mg/kg으로 설정하면 미나리는 초과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 위원장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전문가 검토회의 때도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하였던 부분이 워스트케이스로 해서 가장 높은 값으로 선택해야 부적합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TMDI(%)가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 B 위원

그래서 지금 엽경채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 위원장

이 앞에 나온 4가지 항목 중에 경우의 수를 뒤서 그중에 가장 낮은 값을 정하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이게 무너지면 관리가 안 됩니다.

○ 식품위해평가부

소면적 작물인 점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나리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였으면 3.0 mg/kg 이상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검토하였겠지만, 우연히 저희가 비스트리플루론을 검토를 할 때 엽경채류의 대표작물로서 미나리를 선정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나리만 엽경채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B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나리가 이 기준에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저희가 미나리에 대해서 따로 검토하고 다른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자체는 미나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면적 작물에 대해서 설정하는 자료로써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나리가 기준에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미나리를 포함해서 소면적 작물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셔야 합니다.

○ B 위원

사실 뭐가 먼저냐인데,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미나리가 식약처에서 제안하는 값을 초과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납득 할 만한 논리로 접근은 되지만, 이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무시하고…….

○ 식품위해평가부

무시하였다기보다는…….

○ 간사

설명해 드리면, 미나리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소면적 작물은 우리나라에서만 좀 많이 쓰는 것이고, 정말 조금 적게 생산하는 모든 작물에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로 실험을 한 작물이 미나리입니다.

○ B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미나리가 지금 안전사용기준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유해물질기준과 1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B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의에 의해서 잘못 사용하였을 때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C 위원

대표작물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을 하면 미나리의 잔류량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나리에 안전한 수준으로 기준설정을 해놓으면 그것보다는 적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소면적 작물에 MRL을 설정하지 않으면 PLS 적용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이런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4개의 잔류량 중에 하나 최저값으로 기준 설정한다는 그 개념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B 위원님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 B 위원

네.

○ 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 H 위원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가 농진청에 얘기해서 소면적 농산물의 잔류량이 높게 나올 경우에는 농민들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수확 전 출하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행정적인 조치나 안내가 필요합니다.

○ 간사

저희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이 기준을 근거로 생산단계에 농민들을 지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농민들 지도하는 절차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확할 당시 잔류량이 높게 나온다면 출하를 연기하든지 용도를 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F 위원

미나리는 식약처 차원에서 소면적 그룹MRL 기준을 설정하려고 만든 잔류 성적서이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나리가 사용등록이 되어 자료상으로 MRL이 높을 수 있으면 농진청에서 다시 미나리의 품목 등록 신청이 됩니다.

○ 위원장

미나리의 잔류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면 MRL을 개별 등록을 합니다.

○ 간사

보완설명을 올리면, 재배면적이 작고 너무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농진청이 모든 실험을 할 수도 없고, 또 PLS를 해야 될 입장에서 농민들의 피해가 크니까 대표작물로서 그룹MRL을 설정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도 생산량이 늘어서 농진청이 관리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추가해서 기준을 신설하면 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식약처가 지원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 E 위원

이 사업이 식품안전관리원하고 통합되면서 새로 생긴 사업이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기준이 없는 것을 불검출 적용을 막기 위해서 식약처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행한 지 7~8년으로 꽤 됐습니다. CODEX는 그룹이 소분화 되어 있습니다. CODEX 같이 우리도 서브그룹의 기준을 가지고 국제기준도 설정할 수 있는 사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간사

보완설명을 올리면, 사실 저희도 현재까지는 과거에 만든 잔류허용기준 설정 원칙을 가지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잔류농약 설정 기준 원칙을 만들어서 전문가 검토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원칙 안에는 CODEX의 원칙도 많이 수용해서 제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심의 때부터는 새롭게 만든 기준설정 원칙을 가지고 다시 제안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C 위원

공교롭게도 이 미나리가 이른 봄에 나오는 식물이다 보니까 부피에 비해 무게가 적게 나갑니다. 농약을 분석할 때는 무게 당 농약의 양을 계산하다 보니 미나리에서 농약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실제로 쪽파나 이런 것들은 수분함량도 훨씬 많고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미나리에서 농약 잔류량이 높게 나오면 다른 농산물에서는 미나리보다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룹 잔류허용기준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몇 개의 대표농산물만 설정해놨는데 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룹을 할 때도 농산물의 종류와 재배되는 형태에 따라서 좀 더 늘어

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물질기준과 1

3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 H 위원

104페이지 사이플루메토펜 같은 경우 CODEX, 미국, EU, 일본이 기준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유해물질기준과 1

네.

○ H 위원

그 품목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준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까?

○ 유해물질기준과 1

각각의 품목으로서 없습니다.

○ H 위원

두 번째 크로마페노자이드 같은 경우에는 EU가 현재 0.01 mg/kg으로 되어 있고 ‘\*’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0.5 mg/kg으로 제안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듭니다.

○ E 위원

EU는 미등록일 겁니다.

○ H 위원

미등록인데 Spring onions, green onions 이런 품목이 적혀 있습니까?

○ 식품위해평가부

0.01 mg/kg이면 최소기준 적용이니까 기준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H 위원

그런데 EU에서는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품목을 적어듭니까?

○ E 위원

EU는 식품을 전부 나열하고 기준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등록된 거는 수치가 올라가고 미등록된 거는 ‘\*’ 마크로 해서 정량한계로 표시하죠.

○ H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식품 품목명도 onions 이런 식으로 나열하여 적습니까?

○ E 위원

네, EU는 전부 다 적습니다.

○ H 위원

네, 이해하였습니다.

○ 위원장

네, H 위원님 이해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3호 안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3호 수입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유해물질기준과 1

123페이지 가겠습니다. 3호 안전입니다. 말라티온 등 13종 농약 22건의 수입식품 기준 신설 요청 건입니다.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있었고,

관련된 안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딸기에 대한 말라티온 잔류허용기준 신청 건입니다. 미국에서 수행된 6개 포장시험을 근거로 OECD 계산값, 미국의 설정 요청 건, CODEX 기준 등을 고려해서 1.0<sup>+</sup> mg/kg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21건의 설정 요청 건이 검토되어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1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벤다짐의 후추 개별기준 삭제 건입니다.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향신열매의 그룹기준 설정 요청 건으로 제출된 JMPR 평가보고서 및 CODEX 평가방법을 준용해서 기준을 설정하였던 건으로, 후추의 모니터링 자료만으로 향신열매 그룹기준을 설정하면서 이미 있는 후추의 개별기준 0.15<sup>+</sup> mg/kg을 삭제하겠다는 건이었습니다. 두 건은 같이 검토됐는데 그룹기준 0.1<sup>+</sup> mg/kg 설정 건은 5월 10일 제1차 식심을 거쳐서 이미 고시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후추의 개별기준 0.15<sup>+</sup> mg/kg 삭제 건은 행정절차 상 이번에 행정예고가 되면서 여기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124페이지에 해당 기준 삭제와 관련해서 오뚜기를 포함한 6개 업체에서 기준 유지를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후추의 주 생산국인 베트남의 카벤다짐의 잔류허용기준 또한 0.1 mg/kg입니다. 그룹기준이 설정된 자료가 후추의 단일품목 데이터로 설정했던 건이므로 후추의 개별기준 삭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준 유지 요청 건은 불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호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해물질기준과 1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향신열매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모니터링 자료로 기준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룹기준인데, 후추 단일품목으로만 그룹기준 설정을 검토했던 건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 당시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추의 모니터링 자료만으로 CODEX에서도 그룹기준으로 진행을 했던 건이어서 저희가 다르게 됐던 건입니다. 다만 후추의 기준은 그 전에 이미 국내 업체에서 본인들의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설정 요청했던 건이어서 0.15<sup>+</sup> mg/kg이 설정됐던 건인데, 그룹기준이 더 하향으로

변경되어 업체 측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저희가 확인 해본 결과 업체에서 우려한 것처럼 0.1 mg/kg을 넘어서 부적합이 나는 사례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불수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C 위원

검토의견 및 수용 여부에 표시된 바로는 베트남에서도 관리기준이 0.1 mg/kg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0.1 mg/kg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모니터링 자료에서 나왔던 0.15 mg/kg,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온 것도 수용해달라는 것은 농약을 좀 더 과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안전은 불수용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H 위원

수입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 하는데 국내 기준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건데, 국내 기준이 없으면 수입식품 기준설정을 해주고 이는 국내에서 해당 농약을 사용 안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127페이지 아세페이트를 보면 국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수입식품의 기준 설정 신청이 되는 것이죠?

○ F 위원

그게 아니라 국내 기준이 있더라도 저희는 한 포장을 갖고 기준을 설정 하는데, 외국에서 우리 기준에 근거해서 수입을 할 때 부적합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면 외국 회사에서 잔류성적서의 포장 수가 많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서 기준 재설정을 위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준과 비교해서 잔류성적서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기준이 좀 합리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국내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IT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식품위해평가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128쪽 보면 고구마의 경우에 국내등록 여부에 X가 쳐져 있는데, 티아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물에 이미 허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 ○ H 위원

그렇다고 보면 CODEX 원칙에 어긋나요. 우리나라는 기준이 있으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는 그 기준을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야 해요.

### ○ 식품위해평가부

이 땅콩은 잘못 표기가 됐거나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 ○ F 위원

그런 논란이 초창기에 IT 만들 때 있었는데 왜 자국이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수입하는 기준을 다시 만드냐는 것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식품의 기준을 재검토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로 수입을 할 때 식품 쪽, 유통 쪽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기준이 있더라도 IT를 통해서 합리적인 자료가 제출되면 재검토를 하자고 위원회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때 당시에 농약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굳이 국내에서 엄격하게 했는데 수입하는 것도 동일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식약처 및 정부 기관과 협의하여 부득이하게 우리나라 식품 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은 합리적인 자료 검토를 통해서 기준 재설정을 검토하자고 하여 IT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감사

보완설명 올리면, 기본적으로 IT는 국내에 재배되는 작물이 아닌 주로 수입되는 작물에 외국에 등록된 농약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설정된 원칙이 국내 유통산업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은 그 기준을 농진청에서 규정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 등록된 IT 기준을 국내와 수입식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F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과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잠정기준을 다 폐지하고 국내 기준 또는 IT 기준으로 전환하는 절차에서 특히 땅콩의 아세페이트도 마찬가지로인데 잠정기준은 어차피 폐지가 될 것이고, 필요한 IT에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IT 기준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업체 간의 소송에도 많이 들어오고, H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IT 기준과 국내 기준 조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H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설정하면 우리 쪽에서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하더라도 WTO에 보내서 그쪽에서 보고 의견이 아니면 외국에서 요청이 와서 다시 검토하는 건데, 그때는 애네들이 전혀 의견을 제시 안 했다가 막상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 기준하고 안 맞거나 자기네 품목이 없어서, 품목이 없는 경우는 제가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준과 상충되기 때문에 기준을 바꿔달라. 그렇다면 그건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되는 거지 IT 기준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SPS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룰하고는 완전히 상충이 돼요. 우리가 왜 외국 그 나라 기후나 토양에 맞춰서 나름대로 했던 그 기준성적을 무조건 따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SPS 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고, 그때 당시 그 나라에서 이의 제기를 안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 ○ 간사

그런 부분들의 혼란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사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의안에 올라와 있는 안건들은 잠정기준을 IT 기준으로 전환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H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으니까 다시 과거의 자료부터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체크를 해서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식약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세요. 식약처도 고민이 있습니다. 국내 기준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수입을 안 하면 도저히 산업계가 운영이 안 되는데 외국 시험에서 잔류량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2개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 ○ F 위원

아마 예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설정원칙을 유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설정원칙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 명시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시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네,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 간사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도 사실 최근에 국내 기준이 있는데 IT 기준 설정을 해주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모든 품목에 대해 다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작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라든지 밀 이런 작물들은 수입이 되지 않으면 국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수입에 100% 의존이 예상되는 작물들 위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화할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준을 적용할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식약처에서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 B 위원

147페이지하고 149페이지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준이 있는데 IT 자료 검토요청이 들어와서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인 국내 기준인 배, 사과 기준을 삭제하고 IT 인과류 기준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에서 방금 말씀하신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번 안건은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부터 검토를 하여 기준설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간사

현재 이렇게 진행되어 온 과정들이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된 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서 그 사항들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할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 사항들을 다시 체크해보고 그 체크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의논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B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의미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절차도 있고, 사실 전문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다 되었던 것 같은데, 위원회 할 때마다 2년 전부터도 국내 기준과 수입이 들어왔을 때 상충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매번 우리가 검토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 간사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검토안 자체가 여러 단계를 거치고 과거에 해왔던 방식에 의해서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현재 하는 방식이 올바른지를 한 번 더 체크하고, 방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한 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확정되면 그 안대로 다시 원칙을 바꿔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당장 다음 안건부터 이 원칙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현재 하는 방식이 올바른지 타당한지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지금 식약처의 의견은 현재 회의자료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의 설정 기준에 맞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 중에 반영할 게 있으면 추후에 반영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이걸로 통과하는 거고, 과장님 그 말씀이시죠?

○ 간사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안건은 기존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원칙 대로 했으니까 원안 동의해 주시면, 현재 H 위원님이나 B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게 있는지, 타당한지 절차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습니다. 그 검토 결과를 다시 한번 의논드리고, 그 의논드린 결과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방법대로 다음부터는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원안의결이 아닌 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I 위원

이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칙을 어느 정도 다 지켜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인정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거기에서 좀 더 변경이나 아니면 원칙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조금 시간을 갖고 원칙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간사

네.

○ 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식약처의 의견은 현재 회의자료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만든 자료니까 이대로 가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검토기준을 바꿔야 하면 나중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 I 위원

수입식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 시한이 있는 거죠?

○ 간사

이 건은 하면 바로 고시가 될 거고요. 다음 안건의 처리 방법을 다시 상의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이 검토기준을 다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설정원칙에 뭔가 추가를 하는 단계를 거쳐야 이게 바뀌는 거지 이 자리에서 말로만 바꾸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 F 위원

설정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게 지금까지 가져온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평가하고 설정 원칙을 바꾸면 거기에 맞게 다시 또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그게 절차가 맞는 거죠. 그래서 H 위원님이나 B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식약처에서 추후 검토해서 만약 설정원칙을 바꿔야 한다면 바꾸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위원님들 혹시 여기에 의견 있으십니까?

○ H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국내에 이번에 등록되는 것들은 두, 세 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48페이지를 보면 이미 국내 기준 설정할 때 2019년도에 국내 자료를 가지고 배랑 사과를 0.7 mg/kg로 설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0.7 mg/kg이 어떤 근거가 없이 그냥 잠정기준으로 설정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검토안을 봤을 때 0.7 mg/kg입니다. 우리는 0.7 mg/kg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1.5 mg/kg로 설정해달라 하니까 1.5 mg/kg로 올리는 겁니다. 이건 국제적인 잔류허용 기준 설정하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해서 우리나라에 아예 없는 물질이고 사용도 안 했고 등록도 안 한 물질이라고 한다면 외국의 수입 기준 데이터 이용해서 기준설정 한다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데이터가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외국의 잔류시험데이터를 가지고 갑자기 기준을 올리는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건들 몇 개는 홀딩하고 정확하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원칙이 옳다 하면 원안 통과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바꾸자 한다면 다시 재검토 안을 만들겠다”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는 그냥 가자고 한다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H 위원님의 의견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기준 만들 때 국내 기준보다 수입하는 농산물의 기준이 높을 때 그걸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작물들, 우리가 수입을 안 하면 우리 산업이 망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T 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기준을 올려줬습니다.

○ H 위원

이해했습니다. 밀가루 건의 경우 이해하겠는데, 이건 배량 사과잖아요.

○ 식품위해평가부

H 교수님 의견에 저희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잔류물질분과를 운영하는 운영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원칙은 때때로 심의에도 올려 검토되면서 동의를 받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 전문가 회의까지는 그 원칙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과 ○○○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전문가 위원회에서 그 원칙을 정했을 때에도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이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지금 H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원칙은 정해져야 하지만 원칙도 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아마 바뀔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 검토회의를 빠르게 ○○○ 과장님 쪽에서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실 거고 이번 안건은 이미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유해물질기준과 2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IT 기준이냐 국내 기준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과 기준이 0.7 mg/kg이었다가 다른 제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했을 때 훨씬 더 높게 나온 경우에 추가적으로 높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IT냐 수입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료에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 14일전 4회 처리한 것에 대해서 0.7 mg/kg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IT 같은 경우 0일차 자료를 가지고 한 거고, 이게 잔류자료가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해서 기준을 설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 간사

지금 말씀하신 원칙에 H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IT 기준이라 하면 수입제품을 수입해서 유통하고 제조하고 가공하는 기준이 아니냐고 질의가

왔는데 그게 원칙에 맞는데, 우리나라는 농진청에서 IT 기준이 있다고 하면 국내의 등록사항을 맞춰서 IT를 같이 국내 기준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IT 기준을 국내도 사용하고 수입도 사용한다고 현재 해석을 하고 공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기준이 0.7 mg/kg이지만 농진청에서도 이것을 1.5 mg/kg로 사용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를 했거든요. 전문가 검토회의는 농진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농진청에서도 충분히 동의가 있어서 이게 진행되어온 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항을 충분히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한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농진청과 전문가와 기준설정 원칙대로 해왔던 거고, 그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다시 돌아가기는 사실 절차가 너무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방법이 올바른지를 다시 체크해보겠습니다.

○ C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의 기준도 0.7 mg/kg이 아닌 1.5 mg/kg로 상향할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 거네요?

○ 간사

기본적으로 IT를 설정하면,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수입제품만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IT 기준을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농진청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국내 기준으로 같이 설정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1.5 mg/kg가 인과류에 농진청에서도 1.5 mg/kg로 같이 본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C 위원

지금 이게 10% WG로 2000배 살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살균제니까 기본 아마 7일전 3회 살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0.7 mg/kg이 검출되면 나오는 양 자체가 좀 적습니다.

○ 위원장

이 시점에서 세세한 잔류량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인 틀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식약처가 잔류허용기준을 하나만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국내 기준이든 수입 기준이든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향신료 같은 경우는 잔류자료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자료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안 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망할 정도 되면 식약처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문가 검토회의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왔던 것을 이게 결론이 나서 기준에 반영시켰고 그대로 해왔는데, 히스토리를 거치면서 정해진 기준이 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 E 위원

일단 식심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이 되면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시스템은 한 품목을 가지고 한 자료만 갖고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아까 ○○○ 주무관이 얘기했다시피 또 다른 자료가 오면 또 상향하고 상향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자료도 전체 자료를 크게 봐서 기준을 상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기준 설정할 때 외국 자료도 받습니다. 국내 자료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수입도 되고 수출도 되고 자기들 생산하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생산한 자료까지 국내 것 같이 해갖고 기준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정해놓고 한번 하면 거의 안 바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나라 수출하는 데 기준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생산하면 농약은 기준을 바꿔 줍니다.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 CODEX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0.5 mg/kg인데 우리나라 파가 2 mg/kg까지 간다고 하면 자료를 내가지고 다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정리했으면 좋겠고, 동물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CODEX 기준이 있으면 다 조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외국 자료 다 같이,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I 위원

전문가검토회의 때 농진청에서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역차별이 심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농진청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농진청에서 괜찮다고 했을 때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이미 다 거치고 행정예고를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은 제시된 것처럼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아까 E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식심 위원님들 중에 굉장히 격론을 거쳐서 의견을 내는 게 정당한 거예요. 좀 반복되는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 바뀐 규정도 있고 하니까 언제 우리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기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간사**

저희가 학회의 장소가 되든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번 위원님들 분과위원회 토론회를 거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주 전에 저희 과에서 논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IT 기준을 가지고 농진청에서 등록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걸 IT 기준을 남겨야 되는가, 그걸 국내 기준으로 전환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IT는 순수하게 국내 기준 없이 수입되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과에서 논의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음에 저희가 논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H 위원님하고 B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논의했던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H 위원**

네, 동의는 합니다.

○ **위원장**

네, 격론을 했네요. 그렇다면 세 번째 안건은 논의를 많이 했지만 원안대로 심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4호 국내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기준 폐지**

○ **유해물질기준과 1**

165페이지입니다. 4호 안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성 문제로 국내에서

클로르피리포스가 포함된 농약의 품목이 취소됨에 따라서 클로르피리포스의 52개 개별 품목의 잔류허용기준을 폐지하고, 그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 안에 대해서 행정예고 동안 제출된 의견입니다. 11개 업체 및 필리핀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별로 취급하는 농산물의 주요 산지의 관리 어려움을 들어서 시행일을 연기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적용은 7월 행정예고 후에 시행일까지 약 1년 6개월은 클로르피리포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준비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저희가 1차 판단했었으며, 또한 해당 농약을 이미 사용한 식품의 유통기한을 고려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또한 올해 CODEX 잔류물질분과에서 이 클로르피리포스의 기준 폐지안이 논의 되어서 현재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논의하기 전에 이 4호 안건은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회피·제척 대상이 계십니다. D 위원님이신데, 그래서 공정성 차원에서 D 위원님은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위원

네.

○ 위원장

이 건은 전에 우리 아마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던 건이예요. 그때도 격론이 있었고, 24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해도 너무 기간이 짧지 않느냐는 의견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지금 보면 업계 의견하고 소비자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소비자 쪽의 ○○○ 위원님이 참석을 못하셨네요.

일단 업계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D 위원

안 그래도 오늘 안건에 이 건이 올라와 있기에 의견 제시만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의결은 당연히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일단 실행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ODEX에서 기준을 삭제

한다고 해서 기준 삭제하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클로르피리포스 기준이 삭제될 거라고 저희도 계속 인식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직접 산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회사 단독으로 1년에 5만 톤의 원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케냐, 브라질에서 대부분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도 개별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커피 수요가 한 자릿수 대이기 때문에 바잉파워를 가질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말씀드린 건 농산물 같은 경우 봄에 파종하는 경우는 가을에 수확하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시기로 보면 가을에 파종해서 다음 해에 수확합니다.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이면 선적 기준으로 내년부터 바로 산지에서 살포 금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미국은 농약 관리가 잘 되겠지만, 농약 관리가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커피 원두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아프리카, 중남미 농가들이 되게 영세합니다. 특히 베트남도 같은 사정입니다. 커피 원두 같은 경우 파종 시기가 나라에 따라 봄, 가을로 다르긴 합니다만, 파종 시기가 가을인 경우는 다음 해에 수확이 됩니다. 그럼 다음 해에 수확한 후 최소 그다음 해인 수확할 때까지 1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입과 오버랩이 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용금지가 실제로 시행되고 농약을 안 쓰고 나서 그다음 해에 수확이 되는데 그게 수입되기까지 또 1년 정도 걸립니다. 이런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는 100% 수입하는데 우리나라만의 기준으로 산지에서 못 쓰게 해도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CODEX 기준을 따르는 다른 나라에서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 수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기준이 바뀌게 되면 10% 정도의 부적합률이 발생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결정적인 이유를 2가지로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 D 위원

네, 재배기간과 수확해서 수입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삭제 시행일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만약 유예기간 연장이 안 됐을 때 원안대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산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으십니까?

○ D 위원

저희가 5만 톤 정도 수입하고 있기에 예년 기준으로 보면 5천 톤, 6천 톤은 통관해서 부적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자체 분석 결과이긴 합니다만 10% 이상 정도가 0.05 mg/kg으로는 적합할 수 있지만 0.01 mg/kg으로 개정 되면 부적합이 그 정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커피 원두를 수입하는 회사가 많긴 한데 타 회사들은 분석을 안 하기에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재배기간부터 수확 후 유통기간, 또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의 유통기한을 따지면 2024년 1월 1일 시행은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 D 위원

저희가 식약처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1,300억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년 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자료 제출한 그 기간 내에는 1,300억 정도의 손실을 예상합니다.

○ 위원장

이 농약은 국제적으로 선진국도 다 금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이런 품목들은 수입해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업계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H 위원

2024년 1월 1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행일을 2025년으로 연장 하면 다른 나라나 EU가 다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팔 수 없는 물량이 우리나라로 다 수입될 수 있습니다.

○ 간사

현재 폐지가 된 나라는 EU와 미국만 폐지가 됐습니다.

○ H 위원

검사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 간사

기준도 다 폐지가 됐습니다.

○ H 위원

우리나라처럼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 간사

미국은 유예기간이 짧았습니다. 6개월 정도 췌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주에서 평가 중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나라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CODEX가 위원회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 식품위해평가부

총회 안건이 10월에 상정됩니까? 그러면 총회가 올해 가을에 열립니까?

○ 유해물질기준과 1

네.

○ H 위원

총회가 언제입니까? 10월입니까?

○ 유해물질기준과 1

11월입니다.

○ I 위원

저는 시행시기도 중요하지만, 클로르피리포스가 앞으로 금지가 된다. 즉, 검출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출의견에 수입업체 의견은 많이 안 나와 있지만 많은 수입업체가 모르고 수입하다가 부적합으로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검출도 잘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수입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한번 살펴보라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입업체에 이런 정책이 시행되니까 어떠한 부분을

조심하라고 하면 당연히 수입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D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산지에 있는 대사관들을 통해서 식약처에서 이런 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실제로 산지 대사관에서 모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관리를 해달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유해물질기준과 1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H 위원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은 어떻게 합니까?

○ 간사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은 EU의 경우 따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클로르피리포스와 동일하다고 평가한 사항이고, 미국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와 별개의 물질로 관리하는 사항이어서 저희도 현재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별개의 물질로 보고, 다른 나라의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 물질을 평가하고, 현재로서는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H 위원

잔류물의 정의가 클로르피리포스하고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이 같지 않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 유해물질기준과 2

별개 농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 H 위원

그러니까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은 클로르피리포스-메틸로서 검사, 클로르

피리포스는 클로르피리포스로서 검사하는 겁니까?

○ 유해물질기준과 2

네, 맞습니다.

○ H 위원

메틸에 클로르피리포스-메틸로 안 갑니까?

○ 간사

안 갑니다.

○ E 위원

안 갑니다. 전혀 다른 농약입니다.

○ 위원장

관계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두 농약을 같이 한꺼번에 관리해서 두 개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기준을 따로 관리합니다.

○ 간사

현재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EU의 조치는 평가 없이 두 물질을 동일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클로르피리포스-메틸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동일시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별개의 물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별개의 물질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등록사항은 일괄 폐지를 했고, 대신에 안전사용기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기준만 폐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업계의 의견을 보면 하나는 1년 정도 유예해달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준을 2.0 mg/kg에서 1.0 mg/kg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달라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 시켜달라는 것에 대한 식약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간사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모든 의견이 나온 농산물들에 있어 주요한 소비가 되는 나라가 EU와 미국인데 벌써 폐지와 유예기간을 다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폐지하는 게 국민건강에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신에 폐지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따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의견 2건 중에 기준 2.0 mg/kg을 1.0 mg/kg으로의 점진적 완화 요청 의견은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고, 1년 기간을 유예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H 위원

이미 2024년 1월 1일 시행이라고 식약처에서 행정예고 했는데 1년 더 연장해서 2025년에 시행하자는 겁니까?

○ 위원장

업계는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 H 위원

저는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에 식약처가 농진청하고 항상 부딪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농진청은 농민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식약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무시 못 하는 게 업계 의견입니다. 산업계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PLS 할 때도 식약처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 안전이 올라온 것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을 것 같아요. 논의해 주시고, 여기서 1년 연장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의견 가는 거고, 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산업의 한쪽 축이 무너진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그러면 또 의견 주시면 결정되는 대로 가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점은 하나, 1년 연장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비자 쪽 ○○○ 위원님이 오셨으면 소비자 쪽 의견 듣고 가면 좋았을 텐데 참석을 안 하셔서 우리끼리 의견을 내주면 좋겠어요.

○ E 위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논해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부처라든지 업체들하고 다른 쪽에서 공청회 비슷한 식으로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H 위원

그런데 클로르피리포스가 금지될 때 인체의 위해성 어느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생식독성, 발달독성, 그다음에 유전독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고 한다면 그동안 가졌는데,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고, 그 평가가 이미 됐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인정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제도 기준을 정착시키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계의 영향을 고려해서 1년이라는 유예를 줬는데, 그리고 그 금지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업체들 하고도 논의했는데 당장 기준을 또 1년을 더 연장시키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인체 안전 부분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흔들려지는 부분이죠. 유전독성에 대해서까지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먹는 기호식품이어서 저는 바로,

○ C 위원

농산물에 대해서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시험을 의뢰하면 그다음 달에 바로 나오는 줄 알아요. 농산물은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벼농사 한번 돌리는 데 1년 후에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쪽에다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바꿀 거라고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이 클로르피리포스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주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 유해물질기준과 1

제가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이게 행정예고가 7월에 됐던 건이지 저희가 품목등록 작년에 농진청에서 통보받은 즉시 저희가, 지금 제출한 업체들이 기준이 필요하다고 IT 기준을 신청한 업체들이고요. 작년 11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계속 연락을 드리고 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대체 농약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설명드리고 계속 설명회를 통해서도, 또 각국 대사관을 통해서도 설명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 F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식약처 검토에서 불수용 의견을 냈고, 그거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IT 할 때도 보면 사전에 다 검토를 그런 사회적·경제적 영역까지 검토하시는데, 저희는 이것을 불수용한 의견에 대해서 논의만 하고, 만약에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파급효과가 있으면 아마 업계랑 식약처랑 다시 그런 안건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불수용 의견에 대해서 의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불수용은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냈는데, 업계 의견이 1년 연장해 달라, 아니면 점진적으로 낮춰달라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 과장님, 하나 여쭙볼게요. 이 자리에서 그냥 가면 불수용으로 가는 거고, 이 자리에서 의견이 산업계가 굉장히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더 해도 되겠다고 의결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한 거예요?

○ 간사

지금 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고시 절차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시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경이라든지 뒤로 절차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셔야지만,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든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더 준다든지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의견이 없으면 저희는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I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농약을 우리나라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농약을 갖고 있다가 몰래 묵혀 놔던 것을 갖고 있다가 고추나 가지 이런 데다 써서 이게 검출이 돼도 사실 기준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상관없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법적으로 상관없죠. 농약관리법만 위반이에요.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고,

○ I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시행을 늦추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국내 농산물에 있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조금, 수입도 있지만 국내산 농산물에서 안전성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분씩 여쭙볼게요. C 위원님 의견부터 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O/X를 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표를 쳐 가지고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쪽 여쭙볼게요.

○ C 위원

재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걸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도 요즘 최애 식품이 커피인데, 손에 손에 다 들고 다니는데 그게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그것도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어떤 규제를 할 때는 학문적인 접근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정책적인 사항들, 사회적인 면, 이런 것들이 공통되어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지, 갑자기 이거 나쁜 거야, 내년부터 사용하지 마. 그 대표적인 예가 농약 중에 패러콧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안 돼 하고 나니까 농약값 상승하고 농민들 죽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 식품위해평가부

○○○ 과장님, 질문 있는데요. 우리가 유예기간을 가장 길게 준 게 얼마큼이에요? 이게 저희가 1년 4개월 준 거죠?

○ 간사

행정예고 때까지 1년 6개월 줬고요. 사실은 저희가 1년 6개월을 선택할 때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주요 작물들의 남반구에서의 파종 시기를 고려해서 수확시기를 고려해서 1년 6개월을 선택했습니다.

○ 식품위해평가부

아마 저희들이 다른 것들의 기준을 바꿔 줄 때 유예기간을 줄 때 단순히 1년 6개월이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1년 6개월을 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I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금지된 농약입니다’ 라는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유예기간을 더 준다고 해서, 아마 연장을 하면 그 시점이 되면 또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농약들을 관리를 해왔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간사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유해물질기준과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 저희가 기준을 폐지하면 유예기간을 기본적으로 6개월을 줍니다. 6개월 주는데 이 건은 우리나라의 식량정책과 맞물려 있어서 남반구에서 파종 시기와 수확시기를 고려해서 1년 6개월 선택했고, 사실은 1년 6개월을 선택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담당과는 곤혹스러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과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업계를 대표해서 D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업계의 사정은 알고는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은 내부 위원들께서 원안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저희가 다른 절차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개선한다. 또 그다음에 관련 협회에 안내를 더 철저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연장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또 독성학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의견이 많으셨고, 처의 의견도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따르겠다는 비슷한 의견 나오셨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섯 번째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5호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신설

○ 평가원 잔류물질과 2

5호 안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 잔류물질과 ○○○ 연구관입니다. 163쪽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안전 설명드릴 내용은 3번 주요내용 보시면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3가지로 구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원칙에 습윤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내용은 안전 1번에서 설명드렸던 스피로피디온과 플루피리민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시험법 신설(안)입니다.

그러면 일반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을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 내용 가지고는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을 보시면 됩니다. 7.1.1에 2)에 보시면 두류라고 줄표가 들어있는 거 이건 오타이고, 칸을 줄이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게, 건조 버섯, 차 등 건조 농산물은 건조 전 무게에 해당하는 양으로 정밀히 달아 시료로 사용한다.’ 라고 단서 조항이 달려 있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나.에 1)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습윤화 과정을 ‘개별 시험법에서 건조시료의 습윤화 과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료의 1/2 무게를 정밀히 달아서 두 배 이상의 물을 넣고 30분 이상 습윤화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한 건입니다. 이상 첫 번째 일반원칙 개정안이었습니다.

시험법 신설안은 175쪽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이 신설된 스피로피디온입니다. QuEChERS 방법의 시험법이고 LC-MS/MS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있던 동시분석법과 유사한 QuEChERS 시험법으로 회수율은 79.4-98.5%, 상대표준편차는 7.2%, 검량선은  $R^2$  값이 0.99 이상 나와서 적합한 시험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받고 행정예고 후 고시하고자 안전으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루피리민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동일하게 이것도 LC-MS/MS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량한계는 플루피리민도 0.01 mg/kg 기준이고, LC-MS/MS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험법도 평균 회수율은 85.2~110.7%이고, 상대표준편차는 9.4% 이하였습니다. 검량선의  $R^2$  값은 0.99으로 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시험법으로 판단되어 안전으로 올렸습니다.

이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 197쪽에 붙임2로 스피로피디온 시험법 참고자료가 있으며 플루피리민 시험법의 경우에는 217쪽에 시험법 참고자료 밸리데이션 자료를 다 첨부하였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 살펴보고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니까 하나 여쭙볼게요. 여기에 보면 신설하는 것 중에 습윤하는 방법이 검체 무게의 1/2에 해당하는 물을 넣게 되어 있잖아요.

○ 평가원 잔류물질과 2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그런데 제 기억에 어떤 개별 농약의 분석법상에 시료 몇 g에 물 몇 cc를 넣어서 습윤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평가원 잔류물질과 2

mL이 아니고 cc로 표현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cc나 mL나 똑같은 거니까 단위는 상관없고, 시료 몇 g에 물 몇 cc를 넣어서 습윤화 시킨다고 그럴 때 그때 논란이 되었던 게 모 위원님은 물이 부족하다. 그 양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여기는 총론적인 면에서 검체 무게의 1/2 해당 물을 넣는다고 되어 있는 거고, 개별 농약분석법에 들어있는 그 부분을 정리하실 겁니까? 제 기억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 평가원 잔류물질과 2

위원장님, 184쪽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측정한 시료 무게의 두 배 이상의 물을 넣어서’ 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배 보다 더 많이 넣어서,

○ 평가원 잔류물질과 1

그 말이 아니고, 개별 시험법이 정해져 있으면 개별 시험법을 따르고, 개별 시험법이 없을 경우에만 이렇게 새롭게 추가한 겁니다.

○ 위원장

이것은 총론입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 평가원 잔류물질과 1

네, 총론인데 그 전 단에 그 말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한 나.에 1)에 보면 ‘개별 시험법에 건조시료의 습윤화 과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위원장

제가 이걸 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C 위원

이런 것까지도 원래 이렇게 고시를 해야 하는 겁니까?

○ 평가원 잔류물질과 1

민원 전화가 너무 많았습니다.

○ 평가원 잔류물질과 2

이것에 대해서 얼마를 넣어야 되냐고 하도 민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 E 위원

혹시 감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평가원 잔류물질과 1

아닙니다. 시험검사기관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 F 위원

그런데 한번 검토해보실 게 지금 같은 시험법인데 스피로피디온하고 플루피리민을 보면 같은 두류인데, 하나는 5mL이고 10mL입니다. 그런데 두류에 해당되는 게 어떨 때는 10mL이고 어떤 때는 5mL라는 게 표준시험법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5mL면 아마 1대1 5g에 5mL, 저희가 두류 시험을 해보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 평가원 잔류물질과 1

잘 안 나옵니다.

○ F 위원

네, 그래서 내부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10mL, 이게 앞으로는 계속 공전에 나오는 거니까 5mL가 적합한지, 10mL가 적합한지 통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평가원 잔류물질과 1

저희도 기본 5mL로 했는데 5mL로 안 됐을 때 10mL로 올린 것입니다. 쉽게 하려면 10mL로 하는 게 더 편하긴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잘해보려고 5mL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10mL로 하겠습니다.

○ F 위원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진짜 많이 된 거는 이걸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 평가원 잔류물질과 2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거는 의결사항에서 빠지는 거죠.

○ F 위원

네.

○ 위원장

더 의견 주세요.

○ C 위원

시료마다 다른 게 일반적인 곡류나 이런 것들은 2배 정도 넣으면 되지만 버섯은 수분이 97~98%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2배 넣어서 말도 안 되고 그런 건 한 10배 넣어도 습윤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또 추가하는 양에 따라서도 정량한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C 위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린 버섯 분석할 때는 개별 분석법처럼 물 들어가는 양을 정해주어야겠습니다.

○ C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의 2배 이상의 물을 넣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습윤화 될 만큼 많은 물을 넣는다고 해야합니다. 실제 건조할 때 건조계수를 적용합니다. 건조실험 두층이나 이런 것들 가져와서 할 때는 얼마의 무게를 넣어서 60°C에서 24시간 건조하고 나면 무게가 얼마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분함량을 넣게끔 되어 있으니까 원래 있는 생 시료가 될 정도의 물은 넣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분석이 됩니다.

○ 위원장

워낙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있는 안은 그대로 가고, 추후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원 잔류물질과 1

필요하다면 저희가 분석법 해설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에 자세히 넣든지, 그때는 의견을 더 취합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기 있는 안은 그대로 가고 추후에.

○ 평가원 잔류물질과 1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 C 위원

보충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추라든가 이렇게 수분함량이 굉장히 많은 시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건조하면 무게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원래 배추에 있는 시료의 무게만큼 저희는 물을 한 5배 정도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사용된 시료는 1g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곡류 같은 경우에는 고유에 가지고 있는 수분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을 적게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리 식심 위원회가 C 위원님을 새로 모시면서 분석법을 하면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네요.

○○○ 과장님, 식심 위원 구성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 감사

저희가 이번에 분과위원회 선임을 할 때 사실은 잔류물질분과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분석도 포함했고 수산물 쪽도 많이 포함을 시켰는데, 수산물 쪽 위원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다음에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G 위원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약 관리 실무해설서를 만들어 운영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요즈음에는 QuEChERS 기관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왜 또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스피로피디온 분석법 보니까 Capillary voltage가 1kV 밖에 안 써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는 voltage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을 해설서 이런 것에 담아서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 평가원 잔류물질과 1

네.

○ 위원장

다섯 번째 안전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논의했던 것은 평가원과 식약처에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보완하고, 의결사항으로 갈 일은 없고, 그래서 다섯 번째 안전도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오메토에이트의 잔류허용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함.

2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함.

3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함.

4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함. (동서식품 D 위원 제척함.)

5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함.

○ F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오메토에이트 파에 농약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메토에이트를 파에 치면 오메토에이트가 나오는데, 오메토에이트엔 파 기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아까 얘기가 나온 원칙이 오메토에이트가 농약 등록된 게 없으므로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오메토에이트가 있는데 그 농약 품목을 취소시켰다면서요?

○ F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오메토에이트 파에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 위원장

그러니까 디메토에이트 쓰고…….

○ F 위원

잔류물의 정의 검토로 가야하는데 지금 잔류물의 정의에 대사산물이인 오메토에이트를 넣으시는 거죠? 넣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디메토에이트를 썼을 때 오메토에이트가 검출되면, 다 적합하게 썼는데 잔류허용기준에 오메토에이트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기준 설정을 지연시키면 지금 농약 검사하는 것들은 오메토에이트가 나오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그 논의가 아까 H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대사산물이 확실하면 잔류물의 정의에 넣어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의결

에서 뺐습니다.

○ F 위원

아예 농약 제품이 없으면 지금 말한 대로 다음에 등록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디메토에이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약입니다.

○ C 위원

지금 등록은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 F 위원

아닙니다. 디메토에이트 과 기준이 있습니다.

○ 유해물질기준과 2

과 기준이 있어서 오메토에이트를 올렸습니다.

○ G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잔류물의 정의는 어떻게 묶을지는 나중에 추후 검토하지만, 지금은 오메토에이트 기준을 반드시 설정해줘야 기준이 맞아떨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 F 위원

잔류물 정의로 추후 검토하여 바로 기준 설정이 안 되면 디메토에이트 제품이 지금 사용되고 있으므로 오메토에이트가 검출되면 아예 기준이 없어서 0.01 mg/kg으로 모두 부적합으로 걸리게 됩니다.

○ I 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는 디메토에이트를 가지고…….

○ G 위원

네, 맞습니다.

○ I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오메토에이트가 아니라 디메토에이트에다 집어넣어 주는 게 맞는겁니다.

○ 유해물질기준과 1

추후에 두 기준을 정리하면 되는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 G 위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물도 기준이 이렇게 나뉘어서 기준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은 오메토에이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식약처 의견은 이걸 단순히 사과에 대해서만 올렸다는 의견입니까?

○ 유해물질기준과 1

같은 의견입니다.

○ E 위원

오메토에이트 기준이 마늘, 부추, 사과, 양파, 풋마늘 있습니다. 이는 디메토에이트 기준설정 하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잔류물의 정의는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 이거는 빼버리면 디메토에이트 등록 취소시키는 겁니다.

○ F 위원

디메토에이트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사과 기준을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약인데 기준설정을 안 해 줘서 오메토에이트가 나와버리면 사과에서 다 PLS로 적용돼 버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오메토에이트를 의결 안해서 사과 검출이 되면 PLS로 부적합이 된다는 겁니다.

○ 간사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우리가 기준 등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설정 안 했는데 등록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지금 파에 쓰는 농약이 디메토에이트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 유해물질기준과 2

디메토에이트는 기준이 있습니다.

○ 식품위해평가부

파는 0.01 mg/kg 적용을 받아버리게 되니까 엉뚱한 부적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유해물질기준과 2

제가 설명을 드리면 디메토에이트만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메토에이트로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이 현재 나오는 상황입니다.

○ H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디메토에이트라는 품목을 해놓고 잔류물의 정의를 디메토에이트와 오메토에이트의 합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 유해물질기준과 2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현 시점에서는 기준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잔류물의 정의 관련해서는 다음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의결을 논의할 때는 H 위원님께서서 오메토에이트가 금지된 농약인데 MRL을 설정하면 금지 농약을 써도 된다는 논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의결에서 뺐습니다. 그러나 추후 위원님들 의견 들으니 디메토에이트가 등록되어 쓰고 있는데 여기서 기준을 빼버리면 파에서 오메토에이트가 나오면 PLS 기준 적용받아서 0.01 mg/kg로 가면 부적합이 되는 문제가 생기니 의결을 하고 나중에 잔류물의 정의를 수정해서 디메토에이트에다가 오메토에이트와의 합으로 하는 게 낫다는 의견입니다. 그 말씀이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우선 오메토에이트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 의결 안 해 주면 파에서 오메토에이트 나오면 PLS 적용으로 무조건 부적합입니다.

○ H 위원

디메토에이트에다 파 기준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간사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 지금 절차적으로 불편하니 H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차후에 잔류물의 정의를 통해서 기준을 통합하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기준을 통과해 주시면 나중에 그 부분을 충분히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 위원장

H 위원님, 문제가 시점의 차이인데 잔류물의 정의를 정하는 그 기간에 오메토에이트가 대사산물로 검출이 되면, PLS로 기준 0.01 mg/kg이 적용 되니 부적합이 나오게 됩니다.

○ 식품위해평가부

H 위원님, 확인하니까 디메토에이트 밑에 4개인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의 잔류물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 H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만 고치면 되죠.

○ 식품위해평가부

그걸 고쳐야 합니다. 지금 것도 사실은 오메토에이트의 경우에는 금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디메토에이트로 등록이 되고, 잔류물의 정의가 오메토에이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 H 위원

네,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렵냐 이것입니다.

○ 식품위해평가부

지금 왜냐하면 단순히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예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간사

제가 정리하면, 당장 바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다시 전문가 검토와 행정예고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력 자체가 효과가 없어집니다. 교수님 말씀은 바로 이어서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등록된 농약이라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다 보니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진행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왜냐하면 그 잔류물의 정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기준설정이 안 되니까 그 안에 나오는 건 무조건 부적합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위원들 심의의결서 서명 및 제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안전 원안대로 의결함.

2호 안전 원안대로 의결함.

3호 안전 원안대로 의결함.

4호 안전 원안대로 의결함. (동서식품 D 위원 제척함.)

5호 안전 원안대로 의결함.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